

의원 발의 조례안



거창군의회

목 차

1	거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
2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3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	19
4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5	거창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5

거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	발의일자	2025. 10. .
		발 의 자	신미정,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거창군에는 화강석 조형물을 비롯해 지역을 상징하는 다양한 공공조형물이 있음에도 관리 체계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공공조형물 설치에 대한 기준이 없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 제외(안 제1조~제3조)
- 나. 건립 신청, 비용부담 (안 제4조~제5조)
- 다. 건립대상 선정기준(안 제6조)
- 라.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안 제7조)
-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의무와 관여 금지, 위원회의 회의(안 제8조~제11조)
- 바. 통보, 이의신청 등(안 제12조~제13조)
- 사. 공공조형물의 관리, 공공조형물의 활용(안 제14조~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3) 비용추계서: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거창군을 포함한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 등의 사무, 보수, 보존처리 및 관리 등을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건립 인·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이전, 교체, 해체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었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 제외) 전시나 홍보를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 신청) ① 건립주체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 등을 거창군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교체·해체)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이전·교체·해체)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건립해야 한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역사적 사실과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
3.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5.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6. 유지관리의 용이성
7. 행정기관이 건립주체일 경우 예산의 적절성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기념비 등의 상징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립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교육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주민의 공감도
4. 출생지, 활동지역, 묘소 및 행정구역명 등 관련성

제7조(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사와 실행 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한다.
- ②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주관부서와 관리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거창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시민단체의 임직원, 거창군의회 의원 및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향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며,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제10조(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본인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통보)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인가 등을 결정하고,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작성해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관리부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주관부서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거창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등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군수는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제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전·해체 및 심의 의결된 사항에 상당한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이전·교체·해체) 신청서				
신 청 인	성명(단체명)	(남/여)	연 락 처	
	주 소			
건립 대상	사 업 명			
	건립위치			
	규 모			
「거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교체·해체)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후관리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 등 특정 인물·단체를 기념하는 경우) 4. 공공조형물 저작권자(작가) 경력서 1부. 5. 그 밖의 증빙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이전·교체·해체) 계획서

1. 사 업 명 :

2. 건립기간 :

3. 사업개요

가. 목적(취지) :

나. 규 모 :

다. 모형 또는 형태 : (별지작성 가능)

라. 재 질 :

4. 작품설명 :

5. 제 작 자 :

6. 작가현황(성명, 연락처, 경력 등) :

7. 사 업 비(사업비 조달계획 포함) :

8. 그 밖의 사항

(공공조형물의 보수·이전·교체·해체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저작권자의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를 포함할 것)

[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개요 :
3. 상세내역

구 분	세 부 계 획	비 고
주관(관리) 부서	가. 건립주체 : (연락처) 나. 주관(관리)부서 : (연락처) 다. 작가현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기재)	(별지작성 가능)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계획	가.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 관리주기(반기/분기별 1회) - 관리방법(도색, 세척 등 방법 기재) - 훼손 시 보수방법 나. 주변 환경 정비계획 다. 생애주기(존치기한) (목재, 벽화 등 공공조형물은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대 관리기간 기재) <예> 설치일로부터 10/20/30년간	(별지작성 가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주관(관리)부서 검토의견 포함 (공공조형물의 보수·이전·교체·해체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저작권자의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를 포함할 것)	(별지작성 가능)

년 월 일

건립 주체 : (인, 서명)
관리부서장 : (인, 서명)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사업명		건립일자	
건립위치 (공공시설명)		사업비 (제작비)	
구조 및 규격		형상 (재질)	
건립주체	(성명/단체명, 연락처, 이메일 등)	작가현황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관리부서 (부서명)		생애주기 (존치기한)	
건립취지			
작품소개 (인물 또는 사실 소개)			
관리방법	(도색, 세척 등 관리방법, 훼손 시 보수방법 등 기재) (공공조형물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 등 포함)		

공공조형물 위치(배치)도
공공조형물의 설치 사진

공공조형물의 점검 내역		
점검일시	점 검 내 용	
	전 후 사 진	전 후
공공조형물의 보수 내역		
보수일시	보 수 내 용	
	전 후 사 진	전 후

[별지 제5호서식]

공공조형물(보수·이전·교체·해체 등) 사후관리 저작권자 동의서				
저작권자	성 명	(남/여)	연 락 처	
	주 소			
대상 작품	작 품 명			
	위 치			
	규 모(mm)	• 규모 : 가로 , 세로 , 높이 • 재질 :		
	사후관리방법 또는 이전·교체·해체 사유 및 방법			
	저작권자의견			
본인은 상기 공공조형물(보수·이전·교체·해체 등) 사후 관리에 대하여 위 의견과 같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저작권자 (인, 서명)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준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	발의일자	2025. 10. .
		발 의 자	최준규,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거창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처분하는 농기계는 사용 가능한 상태인 경우가 많음. 하지만, 지금까지 거창군은 처분하는 농기계를 불용물품으로 한 번에 수 십대를 묶어 전자처분시스템을 통해서만 매각을 진행해 거창 주민들은 구매하기 어려운 만큼, 처분하는 농기계를 거창 주민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거창 농업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안 제18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5,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 나) 예고결과 :
- 3) 비용추계서 :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처분단가가 500만원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매각하는 경우 거창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수의계약할 수 있으며, 매년 반기별 수의계약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농기계 처분) (생략)	제18조(농기계 처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군수는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 농기계를 매각하는 경우 거창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수의계약할 수 있으며, 매년 반기별 수의계약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	발의일자	2025. 10. .
		발 의 자	표주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일부 기준을 우리 군 특성에 맞게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산지전용허가의 완화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1) 표고 :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의 60퍼센트 미만에 위치할 것
- 2) 평균경사도 :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0도 이하일 것
- 3) 입목축적 :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거창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80퍼센트 이하일 것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6), 같은 표 제2호다목

1) · 3)에 따른 허가기준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산림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나) 예고결과:

3) 비용추계서: 불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지전용허가의 완화기준)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7항제1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산지전용허가의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6)에 따른 산지의 표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의 60퍼센트 미만에 위치할 것
2. 영 별표 4 제2호다목1)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경사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0도 이하일 것
 -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3. 영 별표 4 제2호다목3)에 따른 산지의 입목축적: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거창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80% 이하일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흥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	발의일자	2025. 10. .
		발 의 자	이흥희,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 가. 산림청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공포에 따라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데, 해당 조례 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거창군 계획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 나. 폐기물처리업 등 자원순환시설은 미세먼지, 악취, 소음 및 수질 오염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생활환경 보장 및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군 계획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위해 관련 규정 신설 (안 제20조 1항)
- 나. 폐기물처리업 이격거리 신설 (안 제20조 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도시건축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 나) 예고결과 :
- 3) 비용추계서 :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지는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주거밀집지역(반경 150미터 이내 5호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7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거창군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반경 800m 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도시계획 심의회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 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서 신설> 1. ~ 4. (생 략) ② ~ ③ (생 략) <신 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 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u>다 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산지관 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지는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한 경우 허가할 수 있다.</u>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주 거밀집지역(반경 150m미터 이내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대지경계선에 서 직선거리 7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거창군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반경 80 0m 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70퍼 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도시 계획 심의회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 다.

거창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신재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	발의일자	2025. 10. .
		발 의 자	신재화,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22.6.10) 및 시행('22.12.11)에 따라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적용범위(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라. 예방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마. 예방·지원사업(안 제6조)
- 바. 예방교육(안 제7조)
- 사.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농업축산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 예고

가) 예고기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참고: 해당없음

거창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 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농어업인
2. 농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
4. 무급가족종사자(농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내의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거창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예방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어업
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4.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작업안
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
춘자로서 군수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양성 및 활용
5. 농어업안전보험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따른 교육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위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
3. 농어업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